

2025년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

- 2025년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관련 달라지는 시험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응시생께서는 시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5년도 시행

1 응시자격(거주지 제한) 변경

- 경상북도개발공사, 경상북도포항의료원, 경상북도김천의료원, 경상북도안동의료원, 경북신용보증재단, 경북행복재단, 독도재단, 새마을재단,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,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,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

구 분	응시요건
변경 전	- 거주지 제한 없음
변경 후	다음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전일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공고일 전일까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

※ 위에 명시된 기관들만 해당. 그 외 기관은 거주지 제한 없으며 변경사항 있을 시 추후 안내 예정

※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

1.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며,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

- 예시 ① 「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, 시행 2023.7.1.」에 따라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군위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며, 대구광역시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.
- ② 「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·광역시·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, 시행 1995.3.1.」 제9조에 따라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며, 대구광역시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.

2.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

3.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